##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11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 안태준·소병훈·서미화

김예지 • 송옥주 • 정준호

복기왕 • 이재정 • 염태영

전현희 • 윤종군 • 맹성규

문진석 • 이춘석 • 이건태

박용갑 • 손명수 • 이연희

김 윤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u>&lt;신 설&gt;</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
		<u>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u>
		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